<지침서식 제9-20호>

해외사무소 설치(변경) 신고(보고)서

처리기간

신청인	상호	(인)	대표자	
	사업자(주민)번호		법인등록번호	
	주소(소재지)	(주소) (전화번호) (e-mail)		
	업종		담당자	
	기업규모	□ 대기업 □ 중소기업 □ 개인사업자		
신청내역	구분	□ 설치 □ 변경 □ 보고		
	사무소명	(국문) (영문)		
	소재지	(국가명) (세부주소)		
	업종코드	(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)		
	설치비			
	유지활동비			
	주재원수	본국파견 : 명, 현지채용 : 명		
	설치사유			
	변경사항 내용			
	변경사항 사유			

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(보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귀하

신청인 귀하	신고번호	
위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신고필함.	유효기간	

년 월 일

신고(보고)기관 : (인)

하나은행

사후관리 유의사항

가. 해외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한 날 부터 6월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 사무소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완료 보고를 할 것.

나. 해외사무소의 설치비, 유지활동비, 자금의 차입 및 대여 등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당행의 사후관리를 받을 것.

다. 해외사무소의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당행에 보고할 것

라. 해외사무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하고 당해 해외사무소의 재산목록, 재산처분명세서, 외국환매각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. 다만, 해외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마. 해외사무소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취득 및 처분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것.